

구 분	내 용
(4) 사용분처리	사용분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5) 손금산입 배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준비금환입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① 해산한 경우(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 제외)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7) 이자 상당액의 추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환입사유 중 ④와 ⑤만 해당함)에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text{이자상당액} = \text{당초 법인세 감소액}^{*1} \times 3/10,000 \times \text{일수}^{*2}$ *1) 미사용 준비금을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그로 인한 법인세 감소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8) 준비금의 승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 ☰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수익사업(열거주의)	비수익사업
① 사업소득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출자지분) 양도수입 ⑤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수입 ⑦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채권·증권(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의 매매차익	①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 포함)·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② 연구개발업(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제외) ③ 유치원과 학교사업 ④ 사회복지사업 ⑤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⑥ 국민연금사업 등